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보고서

윤 선 경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 언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FAO/WHO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이하 CCGP)는 FAO와 WHO가 합동으로 조직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내의 9개의 일반과제분과위원회중 하나로, 회의의 주최국은 프랑스이며 1965년부터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 1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다.

Codex 규정집에 설정된 CCGP의 업무는 CODEX가 위임한 일반적 절차 및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것인데, 즉 1) CODEX의 목적과 적용범위, Codex 규격의 성격 및 각국이 Codex 규격을 수락하는 방식을 규정한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2) 각 Codex 분과위원회가 적용할 지침서를 개발하고, 3) 이런 Codex 규격이나 규정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출한 경제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제도를 마련하고, 4)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13차 회의에서는 위해분석, 개발도상국 특별대우검토, Codex 규격등의 수락절차

개정, Codex 규격등의 권한 및 목적, 과학 및 기타 합법적인 판단기준을 BST에 적용 검토, 비정부국제기구의 참여, 정부간 특별작업단 설립, 국제 교역시 윤리규범 검토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토론 결과를 정리한 13차 CCGP 회의보고서(ALINORM 99/33)를 요약하였다.

II. 13차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

1. 의제 목록

- 의제 1. 개 회
- 의제 2. 의제 채택
- 의제 3. Codex 총회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들
- 의제 4. 위해분석
 - 의제 4.1. 위해관리에 대한 정의
 - 의제 4.2. 위해분석에 대한 작업원칙 (Step 4)
- 의제 5.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 의제 6. Codex 일반원칙 검토

- 의제 6.1.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검토
- 의제 6.2. 수락절차 개정
- 의제 7. Codex 문서의 권한 및 목적 검토
- 의제 8.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의 범위에 대한 원칙문—BST와 PST의 사례를 적용하여
- 의제 9. 규정집 개정
- 의제 9.1.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의 업무에 비정부국제기구의 참여에 관한 원칙(초안)
- 의제 9.2. 정부간 합동 특별작업반 결성을 위한 기준 초안
- 의제 10. 식품의 국제가 교역시 윤리규범 검토
- 의제 11. 기타 작업, 향후 작업 및 다음 회기의 장소 및 날짜

2. 회의 개요

제13차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는 1998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프랑스의 파리, Centre de Conf rences de Bercy에서 개최되었는데 57개 회원국과 24개 국제기구가 참관인으로서 참석하였고 참가인원은 총 250명이었다.

3. 주요 토의내용

1) 위해분석

(1) 제안설명

당초에 검토하기로 하였던 의제 4.3 (식품안전성 목적)은 먼저 Codex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이하, CCFICS)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검토하기 않았으며,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인디아 대표단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위해분석에 있어서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위해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하며, risk tolerance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해기준치를 융통성있게 적용해야하며, 개발도상국의 평가자료, 특히 역학자료 및 노출평가조사 자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위해관리 결

정안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이 이를 시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을 강조하였다.

(2) 위해관리(Risk Management)관련 정의

위해분석정책(Risk Assessment Policy)과 Risk Profile의 정의에 대한 토론이 지연되어, CCGP 의장은 스웨덴을 의장으로 하는 합동작업반을 즉석에서 결성하여 위해분석정책과 Risk Profile의 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Codex 규정집에 기재된 위해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해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의 정의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CCGP는 합동작업반의 토론결과를 검토하여 위해분석정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Risk Profile의 정의는 필요없다는 합동작업반의 건의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교환의 정의는 FAO/WHO 전문가 자문단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정하기로 하였다.

위해분석정책의 정의 : 위해분석과정중에 결정시점에서 적용해야 할 과학적인 판단과 정책선택에 대한 지침. 이 지침은 모든 관련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위해관리자가 설정하는 것이며 위해평가자가 적용해야 함.

(3) 위해분석에 대한 작업원칙(Step 4)

본 작업은 22차 Codex 총회에서 채택된 'Codex 전 분야의 위해분석 원칙 및 지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행동강령(Action Plan for Codex-Wid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isk Analysis Principles and Guidelines)'의 일부분으로 추진된 것으로, 토론결과 이 작업원칙과 Codex 관련기준의 연관성과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기술한 서문(Preamble)을 신설해야 하며 위해분석 구성요소의 체계와 상관관계에 따라 문서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위해분석은 "타당성있는 과학(sound science)"을 기초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예비원칙"과 같은 자료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비원칙"의 정의와 적

용범위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추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국가와 문화가 다른 경우에 섭취량 또는 노출량의 “실제” 추정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high-risk consumers와 고섭취량에 따른 노출량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토론결과에 따라 본 초안을 2단계에서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2)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Codex 회의에서 규격 작성 및 채택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회의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 1 안 :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practical arrangement)를 마련하여 따르되 과반수에 의해 규격을 채택하는 현행을 유지
- 2 안 : 2/3의 찬성에 의해 규격을 채택, 단 이 경우 Codex 총회에 규격을 상정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일부 대표단은 Codex 목적에 맞게 일단은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며, 2/3등의 찬성표에 의한 투표방식을 공식화하면 결국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며 규격 및 관련기준의 채택 또는 개정을 어렵게 할 것이고, 또한 Codex 정책결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새로운 작업을 진척시키지 못할 것이라 하는 등 반대의견이 있었다. 한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를 Codex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을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보의 보급 및 회의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하는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편투표제도(postal facilitated systems of voting)나 전자투표제도(electronically facilitated systems of voting)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방법을 통

해서는 정책결정과정시 필요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논쟁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단(working group) 등의 비공식적인 기구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집단의 권한을 분명히 한정해야 하며 반드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하였다. 또 다른 조치로서, Codex 회의주재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에게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인 합의유도지침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토론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이 문서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3) Codex 일반원칙 검토

(1)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검토

본 안은 SPS 및 TBT협정의 개발도상국 특별대우규정을 Codex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인데, 단 여기서 개발도상국에 특별대우나 차별대우를 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건강보호라는 목적 하에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격기준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각국의 규격기준마다 고유하게 설정된 건강보호수준을 저하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개발도상국에는 잘 조직된 Codex Contact Point나 국가 자치적 Codex 위원회가 없으며, 위해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중요한 평가자료등의 수집에 어려움등 정보교환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데 있어 Codex 규격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자국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격에 맞추어 국가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무역역시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은 무역상대국이 Codex 규격에 따르지 않아서 수입국에서 규정한 국내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많은

소비자는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규격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Codex 규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하였다.

이에 대해 Codex 규격 설정시 위해분석을 적용할 때 혼련을 통해 참여시키거나, 법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자우편이나 인터넷등 현대과학기술을 동원한 원격참여방식(remote participation)을 통해서 성문화된 정보교환도입을 증진시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칠레 대표단은 Codex 분과위원회의 특별회의등을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의 회의참여에 대한 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CCGP는 개발도상국의 특별조항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식품위생규격 설정을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국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며, 상업적이나 무역적인 이유로 보호의 수준을 저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CCGP는 내부조직과 정보통신(특히, 인터넷이나 원격 참여방식등)을 정비하여 Codex 작업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술원조규정, 공동협력규정, 지역활동규정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의제 10에서도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수락절차(acceptance procedure) 개정

본 작업은 WTO 협정하에서 Codex 규격이 참고적인 기준으로 작용함으로 인해, Codex 규정집에 수록된 Codex 규격의 수락절차(acceptance procedure)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토하게 된 것으로, 삭제하기보다는 개정하자는 22차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토론과정에서 굳이 Codex 규격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각국에서 자국의 법령이나 수출입 분야의 참고기준으로 준용해오고 있으므로 각국이 Codex 규격의 준용사실을 알리기 쉽도록 하기 위해 Codex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통보제도(notification system)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상대수출국의 법령을 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유용하도록, 국내법령에 Codex 규격기준을 준용하였는지 여부를 회원국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몇몇 대표단은 우선적으로 통고할 것을 정하고 검토대상규격을 몇가지로 한정된 통고제도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몇 년후에 이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자는 제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토론을 종합한 결과, 새로운 통보제도를 통해 각 정부에게 자국의 법령과 Codex 규격기준상의 차이점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서는 안되며, Codex 규정집의 Codex 식품규격수락(Acceptance of Codex Commodity Standards)에 있는 “자유로운 유통(free distribution)”은 그대로 유보하자고 하였다. 다음 회기에서는 통보제도를 간단히 작성한 문서를 배포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4) Codex 문서의 권한 및 목적 검토

WTO 협정에서 Codex 규격을 참고기준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SPS 협정규정에 있어서 Codex 규격기준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Codex 총회의 질의에 대해 SPS 위원회측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45차 집행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SPS 위원회는 SPS 협정규정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을 내릴 수 없음.
 - 본 SPS 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standard”, “guideline”, “recommendations”를 차별하지 않음.
 - WTO 회원국이 Codex 규격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 Codex 규격기준을 어떻게 준용할 것인가는 그 규격기준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에 영향받기보다는 규격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 지역기준은 본 협정에서 말하는 “국제기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CCGP는 다음의 사항에 적합

한 Codex 규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FAO/WHO 합동 식품규격사업의 목적에 맞으며 각국이 준용할 수 있는 것
- 위 목적에 맞으며 회원국에 권고사항(recommendation)으로 규정된 것, 단 그 권고사항을 자국의 법망에서 어떤 형식으로 준용할 것인지는 각국에서 결정하게 됨.
- 기타 규격 및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

또한, SPS 위원회의 답변서를 살펴볼 때, CCGP는 Codex 규격기준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구성된 이유를 설명하는 서언적인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Codex 문서 CX/GP 98/9의 58항에서 제기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Codex 규격의 별첨(Annex)으로 첨부된 소위 “권고기준(advisory material)” 삭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많은 대표단이 이 권고기준이 식품의 무역상 공정한 관행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유보할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TBT 협정에서 강제성이 없는 이 권고기준도 준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이 권고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Codex 사무국장이 TBT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TBT 협정과 관련있는 Codex 규격의 권한에 대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호주 대표단은 산업체/정부/소비자의 실행규범에서 권고기준을 준용하였던 자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CCGP는 이를 수락하였다.

5)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의 범위에 대한 원칙 - BST와 PST의 사례를 적용하여

22차 Codex 총회는 JECFA와 Codex 잔류수의약품 분과위원회(이하 CCRVDF)에서 과학적 자료를 재평가하기 전까지 Bovine Somatotropin(이하 BST)의 MRL 채택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CCGP가 실시하

는 BST에 대한 “다른 합법적인 판단기준(other legitimate factors)”의 적용에 대한 검토작업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JECFA의 BST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차 JECFA 요약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독성모노그라프가 실린 최종보고서는 내달에 WHO에서 발간할 것이라 하였다. PST는 JECFA에서 아직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본 회의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EC의 참관인등과 일부 대표단은 식품위생 관련작업에서 과학적 사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하며 Codex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은 아니므로 JECFA등의 과학적 판단에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Codex 원칙문의 문구중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무역시 공정한 관행촉진에 대한 합법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Codex 회원국은 정부대표자로서 과학적 평가외에 많은 요소를 부가하여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정책결정시 다른 합법적인 판단기준(other legitimate factors)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BST의 경우에도 독성학적 평가만이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ST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도입한 농업정책에 반하며, 환경을 위협하고, 보통 개발도상국에서는 BST 사용 생산공정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며, BST를 사용하면 동물의 면역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항생물질의 위해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 하였다. Codex 기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됨을 증명하기 위해, BST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합법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무역에서 Codex 규격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며, 동물의 건강과 동물의 안녕을 BST의 경우의 “합법적인 판단기준”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대표단은 잔류수의약품의 MRL 설정과 같은 식품안전성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과학적인 방법의 위해평가원칙이 결정기준이 되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위험, 소비자의 불안등, 과학적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국내 정책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국제기준의 목적은 식물조치에 관한 한 SPS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단지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더욱이, BST에 대한 경제적 문제성 등을 정당화할 반대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BST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 회기에서 토론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합법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일반사항은 장기작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 (1) Codex 총회가 제한한 대로 위해분석의 작업범위에서 다른 합법적인 판단기준 검토
- (2) BST 사례에 다른 합법적인 판단기준 적용 검토.

6) 규정집 개정

- (1)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작업에 비정부국제기구의 참여에 관한 원칙(초안)

Codex 총회의 Codex 작업에 비정부국제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이하 NGOs)의 참여를 위한 지침서 작성요청에 대하여, FAO/WHO 합동 식품규격사업의 정책결정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CCGP는 본 안은 NGOs에게 Codex 규정집의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Commission's Rules of Procedure)중 규정 VII에 따라 “참관인의 자격(Observer Status)”을 부여하는 것이지, NGO를 국가 대표단에 참여시키는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많은 대표단은 이 규정으로 Codex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록 국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국가내부적으로 구성된 NGOs에 대한 규정은 추가하지 말자고 합의하였다. Codex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중 특별히 오직 하나에게만 참관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반대의견이 있어 이 규정을 각괄호(square bracket, [])로 묶

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CCGP는 NGOs가 제출하는 문서의 권한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하지만, 그 자료를 2,000자로 제한하지는 말자고 하였으며, NGO가 Codex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NGOs의 “참관인의 자격” 신청서를 단체의 신뢰성에 대한 필수적인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의 토론결과에 따라 본 초안을 개정하여 공람하여 다음 회기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정부간 합동 특별작업단 결성을 위한 기준 초안

새로운 하부부서 결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FAO 위원회에서 정부간 합동 특별작업단(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s) 결성을 제안하였으며, 본 안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작업우선순위 결정 및 하부기관 설립 기준(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 Prioritie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중 작업우선순위기준과 하부기관 결성기준을 분리하는 개정작업이다.

토론에 따르면, 합동 특별작업단을 결성하면 일반 Codex 분과위원회에 작업이 중복됨으로 인해 예산절감차원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작업수행이 기존의 조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새로운 기관을 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합동 특별작업단은 Codex의 모든 회원국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Codex 조직과 같은 규정 및 설정절차에 따라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작업우선순위기준안과 하부기관결성기준안을 각각 보고서(ALINORM 99/33)에 Appendix II와 III로 첨부하여 23차 Codex 총회에 제출하여 채택을 받은 후 규정집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채택된 안이 기존의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작업우선순위 결정 및 하부기관 설립 기준’을 대체할 것이다.

7)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 검토

WTO 협정문과 CCFICS의 작업결과로 인하여 문구를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각 회원국에게 본 윤리규범의 검토의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관리의 일반지침으로서 이 윤리규범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하기로 하였다.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규범의 목적을 확대하면서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본 규범의 제목을 '윤리원칙 및 일반원칙'으로 개정하자고 하며, 개정기준에 기타 합법적인 판단기준, 안전성을 이유로 화물(consignment)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Codex 기준의 권한의 항목을 추가하자고 하였고, 화학물질을 적정 최소량으로 제한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기타 판단기준"등의 새로운 항목 추가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식품중 화학물질 제한등은 위해분석 작업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특별 및 차등대우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에 따라 본 규범의 개정을 새로운 작업으로 Codex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15차 CCGP회의 전에 공람하기로 하였다.

8) 기타 사항

Code 잔류농약분과위원회(이하 CCPR)의 의장은 동일한 제품에 같은 화합물이 농약으로 사용할 때나 수의약품을 사용할 때 각기 다른 MRL이 설정되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CCGP 및 CCRVDF등이 조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JECFA와 JMPR이 수행하는 방법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CCRVDF의장도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

한편, 분석방법타당성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기 위해 FAO/IAEA 합동 식품관리에 대한 분석방법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비엔나, 1997. 12)가 소집되어, 해당

Codex 위원회에 조화방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Codex 문서배포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Codex 사무국장은 Codex 작업문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이전에 Internet에 올리며 공람문서는 Codex Contact Point와 국제기구에 한정하여 배포한다고 설명하였으며, Codex-L List에는 각 Contact Point,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국제기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List에 따라 공람문서와 작업문서 및 보고서를 배포하게 된다고 하였다.

"Codex Contact Point의 핵심기능"의 정의를 규정집에 신설하고자 하는 Codex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이하 CCASIA) 및 유럽 지역조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CCASIA가 상정한 안을 공람하여 14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Codex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규정집중 참관인으로 참석하는 규정 Rule VII을 Codex 집행이사회에 적용하는 사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4차 CCGP회의에서 진행될 향후작업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는 1999년 4월 26-30일에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위해분석(정의 및 작업원칙),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개발도상국의 특별 및 차등대우, 규격수락/통보 규정, Codex 규격 및 관련기준과 관련있는 TBT협정 조사, Codex '권고' 기준 적용(호주에서 작성), BST에 있어서 과학 및 다른 합법적인 판단기준의 역할,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의 작업에 비정부국제기구의 참여에 대한 원(안), Codex Contact Point의 "핵심기능"(안), Codex의 규정중 Rule VII 적용(참관인에 관한 것), 윤리규범 개정(23차 Codex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임)

III. 결 언

본 13차 회의에서는 합의를 촉진하는 방법,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 검토, 식품의 국제무역시 윤리규범 검토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토론만을 진행하자고 제의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주로 진행되었고 착수

단계에서 의제를 검토하였으므로 대부분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도출되지 않았다.

WTO 협정이 발효된 후 과거에 합의에 의존하였던 Codex 정책결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결론없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BST의 MRL 설정문제가 그런 예인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대표단의 의견에 따라서 '과학외의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이를 반대하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Codex의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식품의 세계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SPS와 TBT협정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조항이 있는데, Codex에서도 이를 도입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선진국은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기술부진 및 산업보호를 위해 식품위생기준을 낮추게 되면 선진국 소비자가 반발할 것이라 하고, 모든 소비자는 공평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였고,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기술지원등의 특별대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서로 매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차후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인데, 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결정하

여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Codex 규격은 WTO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참고기준으로서 Codex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Codex에서 3가지 방식으로 규정한 식품의 기준규격, 즉 standards, guidelines, recommendations이 가지는지 구속력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SPS 위원회에서는 이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각국에서는 이 3가지 Codex기준을 모두 준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Codex 권고기준에 대한 권한을 TBT 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추후 그 답변을 기대해 본다.

CCGP는 다른 Codex 분과위원회와는 달리 과학적 원칙만으로 한정하지 않은 정책적인 사안을 결정하므로, 식품정책 결정권자나 다른 Codex 분과위원회 담당자등 관련자와 미리 상의하여 분명한 입장정리가 되어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강력한 주장을 가진 국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Codex 분과위원회 담당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Codex 운영규정을 숙지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1999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현재의 의제진행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숙지하여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겠다.